

건양대학교 LINC사업단 규정(3-1-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관리운영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52호(2012.5.31))」 및 건양대학교 직제규정 제8장에 의해 설치되는 LINC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LINC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본교의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업) LINC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사업
2.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사업
3.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4. 메디바이오 특성화 분야 지원 사업
5. 기타 LINC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장 LINC위원회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LINC 사업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LINC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LINC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LINC사업부단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③ 교학처장, 미래전략처장, 산학협력단장, 의료공과대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산업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LINC사업단 규정 개정 심의
2.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자재의 구입 및 공동 활용에 관한사항
4. 기타 LINC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9조(LINC사업단장 및 하부조직) ① LINC사업단에 단장(이하 “사업단장”)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체제개편팀, 교육과정팀, 기업지원팀, 특성화지원팀, 사업모니터링팀을 두고 각 팀의 위원장을 둔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LINC사업기간으로 한다.

③ LINC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10조(체제개편팀) 체제개편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산학협력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행정 지원
2. 산학협력중점교원 채용 및 평가 지원
3. 산학취업책임교수 운영
4. 산학협력단 역할 및 역량 강화 지원
5. 위원장은 미래전략처장이 맡는다

제11조(교육과정팀) 교육과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인력양성 지원
2.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지원
3.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운영 지원
4. 취창업지원
5.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맡는다

제12조(기업지원팀) 기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산학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협력 지원
2. 산학협력기관 홍보 및 대외협력 지원
3. 산학협업체 관리 및 운영 지원
4.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맡는다

제13조(특성화지원팀) 특성화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메디바이오분야 특성화 지원
2. 산학협력연계 체제구축 지원
3. Medibio-Complex 구축 및 운영
4. 위원장은 의료공과대학장이 맡는다

제14조(추진운영위원회) ① LINC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LINC사업추진운영위원회(이하 “추진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LINC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팀의 위원장과 관련부서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 팀장을 실무위원으로 한다

③ 추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일관성과 효율성 있는 사업의 추진 및 평가

- 2.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모니터링
- 3.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운영의 방향 제시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5조(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 참여교수 및 산업체 및 교외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단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실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

제16조(운영재원) LINC사업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LINC사업 관련 산학협력 계약 수입 및 성과에 의한 수익금
- 3. 기타 LINC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7조(회계처리) LINC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은 LINC사업단에 편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LINC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규정변경)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LINC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제20조(내규) LINC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LINC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